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Incheon, Economic Capital City

- 지방자치관련 법령 중심 -

최근 제·개정 법령

입법정책담당관실

【 2013. 4. 1 ~ 2013. 4. 7 】

❖ 자세한 법령정보 : http://www.law.go.kr/ ⇒ 최신법령정보 ⇒ 공포법령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2013. 4. 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트장업의 시설 기준 중 요트 보유 기준을 5척 이상에서 3척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의 시설 기준 중 조정 및 카누의 보유 기준을 10척 이상에서 5척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상 종목의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92호, 2013. 4. 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표 중, 시각장애에 있어 장애정도 측정 방법에 관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등급 기준을 신설하며, 간질장애에 있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발작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장애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492호, 2013.4.3)

1. 개정이유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자의 범위,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및

경쟁입찰 참여제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거나,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

나.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 규정(안 제9조의4 신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의 대상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다. 경쟁입찰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안 제9조의5 신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분할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할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분할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49호, 2013.4.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51호, 2013.4.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저탄소차협력금 부과 및 저탄소차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5.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저탄소차협력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추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저탄소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환경 관련 융자업무 중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업무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2호, 2013.4.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대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영업장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 노래연습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화장실, 욕조 등을 설치하거나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 등을 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495호, 2013.4.5)

1. 개정이유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지식재산의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1548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의 방법,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범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을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추어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

다. 국유농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제18호아목)
시 외의 지역의 국유농지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것을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그 농업진흥지역의 시 지역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라. 지식재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안 제42조의2 신설)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등의 추정총액이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동산의 교환 요건 및 방법(안 제5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교환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동산까지 확대함에 따라 동산은 동산과 교환하도록 하되, 동산의 무분별한 교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함.

바.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절차 및 기간(안 제67조의6 신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은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 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에 따른 승인 신청절차 등을 정함.

사.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안 제67조의8 및 제67조의9 신설)

지식재산의 유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지식재산의 공익 목적의 활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